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건강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를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u>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u> 로 한다. <u>단</u> , 구조적 병변은 제 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 ----- ----- <u>부부(사실</u> <u>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u> <u>포함한다)</u> ---. <u>다만</u> ----- -----.